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8
----------	-----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6월 11일, 김생환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12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생환의원)

- 우리사회는 국가 경제를 발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국제적인 기준보다 낮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고 전망함.
- 우리 사회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경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력단절여성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개인의 인적특성, 희망 업종 및 직종 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은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직업교육훈련 실시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셋째,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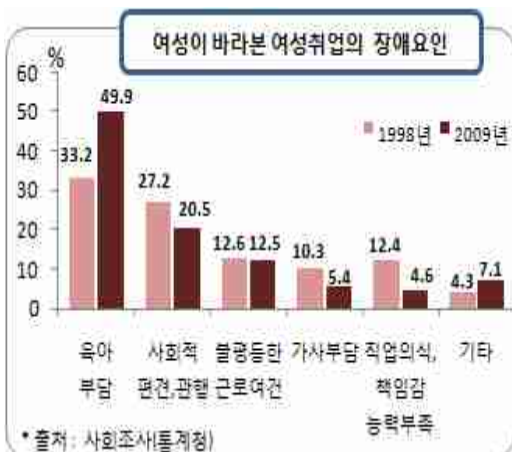
□ 총괄

- 본 조례안의 취지(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함)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서울시 통계(‘2011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에 의하면,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자 하락, 육아부담이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0년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25~29세 연령에서 15.7%(33만3천명)로 가장 높다가, 출산과 육아 등의 영향으로 30~34세에 11.6%(24만6천명)로 하락, 35~39세 11.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1) '09년 15세 이상 서울여성은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9.9%)을 꼽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세부내용

(1) 시장의 책무 및 연도별 시행계획 (안 제2조 및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출산·육아의 부담과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이 절실하며 이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두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4조는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2)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서울시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유망직종 발굴,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3) 경제활동 촉진사업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직업교육훈련 실시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 이는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임.

〈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현황

경제활동 촉진사업(제6조)	2012년 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12	- 여성CEO아카데미 운영 - 멘토특강
2. 직업교육훈련 실시	1,700	- 지역일꾼이끌어내기 -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 장롱자격증되살리기 - 청년 직업의식 고취 프로그램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5,691	- 취창업 상담·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119	- 전문 취창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 취업대비 고급한국어 교육
5.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810	-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6.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도와 환경조성	620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일과-가족 양립 위한 가족친화 직 장조성 사업추진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410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90)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100) - 일자리부르릉서비스 실시(220)

(4)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및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안 제7조 및 제8조)

○ 안 제7조는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창업성공 모델을 보급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현재 여성능력개발원, 남부·북부 여성발전센터 등 3개 센터에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임.

〈표〉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현황(총 3개)

기관명	능력개발원 여성창업보육센터	남부 여성창업보육센터	북부 여성창업보육센터
위 치	광진구 자양동 9-13	금천구 시흥동 산139-2	노원구 중계2동 501-1
규 모	연면적 7,406.85㎡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1,200㎡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02㎡ (지상2층)
설립 연월일	2002. 5월 (준공기준)	1981. 5월 (기숙사→창업보육센터로 개보수)	2011. 5월 (준공기준)
운영 연월일	2009. 4. 28.	2002. 11. 1.	2011. 10. 1.
운영주체	여성능력개발원	남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2012년 사업비	70백만원	150백만원	130백만원
기능	여성(예비)창업자 대상 사무실 제공,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창업교육, 창업자금 연계 지원 등		
특화 사업	-	-	장애인 제과제빵

- 안 제8조는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는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22개소(개발원 1, 발전센터 4, 인력개발센터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참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2012. 5. 1. 현재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	규모	운영주체	근무인원
여성능력개발원		광진구 자양동 9-13	이영옥	'02	대지 3,312㎡ 건물 7,406㎡	서울시여성가족재단(박현경)	19
	여성발전센터	서부	양천구 신월동 139-1	강정숙	'97	대지 1,551㎡ 건물 3,472㎡	(사)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강은성)
남부		금천구 시흥동 산 139-2	윤경화	'79	대지 15,067㎡ 건물 5,929㎡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기영)	11
북부		노원구 중계동 501-1	주영미	'89	대지 4,958㎡ 건물 4,099㎡	(사)한국여학사협회(이상경)	11
중부		마포구 용강동 70-2	김상수	'86	대지 2,085㎡ 건물 3,926㎡	(사)청년여성문화원(진민자)	10
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	명륜동4가 대학로스타시티빌딩	김영남	'99	(건물) 1,071㎡	(사)여성중앙회(홍선자)	15
	용산	신계동 7-2	박영란	'98	915㎡	(사)한국여학사협회(이상경)	5
	중랑	중랑구 상봉동 130-5대림프라자	이보섭	'99	1,025㎡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이윤자)	8
	동대문	용두동 234-1 포은빌딩6층	조미현	'99	1,155㎡	(사)한국몬테소리교육협회(임무영)	8
	강북	수유동 63 수유플라자4~5층	차현주	'99	1,097㎡	(사)한국여학사협회(이상경)	8
	노원	공릉2동 408-4 건설빌딩5층	고혜승	'93	1,161㎡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이행자)	9
	은평	불광1동 267-1 경일빌딩 2층	용지연	'98	1,074㎡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이계경)	10
	서대문	대현동 101-7 혜우빌딩4층	박정숙	'98	1,391㎡	(사)한국부인회총본부(조태임)	9
	강서	화곡동 958-12 화곡빌딩2,5,6층	김정미	'96	1,158㎡	(사)여성자원금고(김근화)	7
	구로	구로동 110-1 회훈타워 2층	유옥순	'98	1,303㎡	(사)한국여성노동자회(정문자)	8
	영등포	영등포동6가 8-1 극동빌딩 4~5층	김은희	'98	1,454㎡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이행자)	10
	동작	사당동 144-10 이수텐빌딩 2~5층	이현아	'98	893.07㎡	(사)BPW한국연맹(박희자)	8
	관악	봉천4동 1564-5 광장 1~5층	이은혜	'98	1,642㎡	(사)온터두레회(이재우)	10
	서초	서초동 1362-16 선영빌딩 1층,4층	이한승	'00	1,231㎡	(사)청년여성문화원(진민자)	13
	송파	가람동 83-7 대호빌딩 2층	류근수	'09	1,017㎡	(사)아줌마가키우는연대(임정숙)	아줌마 5
	성동	성동구 무학로2길 54	김희형	'12	1,105㎡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기영)	7
강남	강남구 삼성동 171-1	서승현	'12	1,036.85㎡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허혜숙)	5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을 이 조례에 반영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근거로 사업을 했는지 답변 바람.
- 답변 : '직장맘지원센터' 등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이 조례안에서 사업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종전에는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주부인턴십 프로그램”이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6.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제7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창업성공 모델을 보급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현황을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종합시책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당시 설치·운영 중인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